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형조직 해양경비기획단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을 경비국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벤처형조직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소관 업무를 해상교통관제과로 이관하면서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벤처형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의5를 제4조의3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과장·종합상황실장”을
“해상교통관제과·해양경비기획단을 두되, 경비과장·종합상황실장·
해양경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10.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활용에 관한 사항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
동에 관한 사항

⑤ 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정보·상황인식 체계 구축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공유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단서 중 “35명”을 “34명”으로, “8명, 9급”을 “7명, 9급”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47”을 “5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0”을 “129”로 하며, 기술서기관 “3”을 “2”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감축되는 기구를 제외한 해양경비기획단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별표4의 2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및 6급 1명)을 제외한 별표4의2의 정원 6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4의2의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5급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4의2의 6급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의3(해양경비기획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해양경비기획단을 둔다.</u> <u>② 해양경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u> <u>③ 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u> <u>1. 해양경비정보·상황인식 체계 구축에 대한 기획 및 조정</u> <u>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u> <u>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공유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u> <u>4. 해양경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제4조의4(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둔다.</u>	<u><삭 제></u>

②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술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장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음주운항, 과속, 항로이탈 등
해양사고 위험 탐지 시스템
(이하 “음주운항 자동탐지시
스템” 이라 한다)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 활
용에 관한 사항
3.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제4조의5 (생 략)

제6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
과·종합상황실 및 해상교통관
제과를 두되, 경비과장·종합상
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
상교통관제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③ (생 략)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5와 같음)

제6조(경비국) ① -----
----- 해상교통관
제과·해양경비기획단을 두되,
경비과장·종합상황실장·해양
경비기획단-----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1. ~ 8. (현행과 같음)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10.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활용에 관한 사항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⑤ 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정보·상황인식 체계 구축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공유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 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 의 정원 중 <u>35명</u>(5급 1명, 6급 8 명, 7급 <u>8명</u>, 9급 18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 ----- ----- ----- ----- ----- <u>34명</u> ----- ----- <u>7명, 9급</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547</u>	<u>546</u>		-1	
일반직	계	·	·	·	·		
		·	·	·	·		
			<u>130</u>	<u>129</u>		-1	
기술서기관		·	·	·	·		
		·	·	·	·		
			<u>3</u>	<u>2</u>		-1	
		·	·	·	·		
		·	·	·	·		